

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30.

발의자 : 김철민 · 위성곤 · 소병훈  
송기현 · 윤영일 · 임종성  
윤후덕 · 강훈식 · 김종회  
정인화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·간척지 등은 임대, 매각, 직접 사용,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·처분할 수 있음.

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·화옹·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.

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 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·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#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시행자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드러난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목재배, 행사·축제, 도시농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임시 사용할 수 있다.
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임시사용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 대상·기간·절차·사용료, 승인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4조의2(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)</u>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방조제공사가 완료된 이후 드러난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목재배, 행사·축제, 도시농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임시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임시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 대상·기간·절차·사용료, 승인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